

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순규 의원

안녕하십니까? 박순규 의원입니다.

지난 4월 1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청계천 시설물은 2005년 10월 복원 후 개장하여 서울시설공단이 대행사업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총 연장은 8.12km이고 하루 4만 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 서울 관광과 휴식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.

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청계천의 청계광장, 수변무대, 광고갤러리, 촬영 및 녹화 공간은 사전신청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대여하

고 있고 매년 1천5백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서울시의 운영 및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본 안전은 청계천 시설물인 청계광장과 수변무대 등을 시민이 이용함에 있어서 수위 상승 또는 감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시장이 시설물 사용을 중지하거나 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개정안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,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